

인도적 지원 업무편람

2003

목 차

제1장 대북지원 추진현황	5
1. 개관	5
2.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6
3.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8
4. 대북지원 관련 주요일지	16
제2장 민간의 대북지원 추진절차	19
1.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한 주민접촉	19
2.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한 왕래	25
3. 대북지원물자 반출	36
4.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37
5.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5
6. 인도지원분야 협력사업	48
(부 록)	55
I. 민간단체별 대북지원활동	57
1. 국제옥수수재단	57
2.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58
3. 굿네이버스	59
4. 남북강원도협력협회	61
5. 남북나눔(기독교 북한동포후원 연합회)	63
6.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64
7. 남북어린이어깨동무	65

목 차

8.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67
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68
10. 새마을운동중앙회	69
11. 선한사람들	71
12.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71
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73
14. 원불교	74
15. 월드비전	75
16. 유진벨재단	77
17.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79
18.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81
19. 평화의 숲	82
20. 한국건강관리협회	84
21.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85
22. 한국복지재단	86
23. 한국불교종단협의회	87
24. 한국제이티에스	88
25.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90
26. 한민족복지재단	91
27. 21세기통일봉사단	92
* 민간지원단체 주요 사업지역 분포도	94
II. 관련법규	97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97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06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8
4. 남북협력기금법	132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137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44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46
8.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	168
9.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76
10. 남북한왕래자의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78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85
1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95

제 1 장 대북지원 추진현황

1. 개 관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 인도적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과 경제악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 동포애적·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함께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북한당국과 주민 모두를 시야에 넣고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을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와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돕는 방향에서 비료지원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1995년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이에 호응해 나서면서부터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국제기구나 적십자사를 통한 간접지원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직접지원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여 왔다. 직접지원은 1995년 쌀 15만톤 지원을 시작으로 1999년 이후에는 매년 식량증산을 위한 비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02년에는 차관공여방식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간접지원은 WFP, WHO, UNICEF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지원초기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를 경유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취하였으나, 1997년 5월 남북적십자사간 합의 이후에는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 2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3년 현재 28개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2.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1980년대 말 이후 계속된 경제여건의 악화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이 대두됨에 따라 1995년 6월 쌀 15만톤 지원을 계기로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8년까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대북지원 활동에 현금 또는 현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실시하였는 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첫해인 1996년에는 WFP, UNICEF 등을 통해 혼합곡물, 분유 등 24억원(305만달러) 상당을 지원하였다.

1997년 들어서는 6월 20일 UN의 제3차 어필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WFP를 통해 옥수수 5만톤과 국산분유 300톤을 지원하였으며, 8월 29일에는 UN의 제3차 어필에 추가 참여를 결정하고 WFP·UNICEF·세계보건기구(WHO) 등에 현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혼합곡물, 옥수수 등 지원을 실시하였다.

1998년에는 UN의 제4차 어필 참여를 결정(4월 30일)하고 WFP를 통해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등을 지원하였다. 1998년까지 정부가 대북지원 활동에 참여한 국제기구는 WFP, UNICEF, WH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었으며, 지원내용은 옥수수, 혼합곡물, 분유 등 식량을 위주로 하여 의약품, 수해복구 등 긴급구호물자 등이었다.

1999년에는 4월 23일부터 6월 3일간 북경에서 남북 당국간 접촉을 개최하여 비료 20만톤의 지원에 합의하고 이중 11.5만톤을 지원함으로써 1995년 쌀 지원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만 의존해오던 지원방식을 당국간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비료 20만톤을 5월~6월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8월에는 옷겨름용 비료 10만톤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0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한편 2000년도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고 10월부터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제1장 대북지원 추진현황

2001년 들어서도 5월~6월에 걸쳐 20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동용 내의 150만벌과 WHO를 통한 말라리아 치료약품 및 방역장비 등의 지원도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4월~6월에 걸쳐 20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식량차관 제공과 비료지원 등에 합의함에 따라 비료 10만톤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과 WHO를 통해 말라리아 방역약제 및 장비 등도 지원하였다. 식량차관은 국내산 쌀 40만톤을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에 걸쳐 전달하였다.

1995년 쌀 15만톤 지원 이후 2002년 말까지 정부차원에서는 긴급 구호차원의 식량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품목을 중심으로 총 5,539억원(5억 3,380만달러)을 지원하였다.

3.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초기 대북지원

1995년 9월 14일에는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하는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북지원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전문구호기관을 통해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계기로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 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IFRC)을

통해 전달하는 간접채널방식이나마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당시 국내 민간단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지원금은 2억 9,500만원 상당에 달하였다.

1996년에는 범종단 사회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발족되는 등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수재민돕기운동이 전개되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간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후 1996년 12월까지의 민간차원 대북지원은 14억 3,4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지원품목은 밀가루, 라면, 식용유 등 식품류와 모포, 양말 등 생필품이 포함되었다.

1997년 3월 31일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쌀 지원 허용 등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민간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국제적십자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한 규모는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39억 7천만원(496만달러) 상당에 달하였다.

한편,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하는 간접 전달방식의 지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임을 고려하여 남북간 직접 전달 방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7년 4월 18일 김영훈 총재 명의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한편, 옥수수 기준 5만톤의 식량을 7월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말에 걸쳐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톤의 1차 지원분 식량을 신의주·만포·남양과 남포항·흥남항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 의존해 온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남북간 구호물자의 직접 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 1997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여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옥수수 기준 5만톤의 식량을 9월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서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한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2차분 구호물자는 1997년 8월 13일부터 전달을 시작하여 10월 29일 옥수수 기준 52,888톤(890만달러 상당)의 전달을 완료하였다.

이어 1998년 3월에는 남북적십자간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1997년 5월 및 7월의 남북적십자간 합의 이후 2차에 걸쳐 1,740만달러 상당(옥수수 기준 106,729톤)을 직접 지원하였고 1995년 9월부터 국제적십자사를 경유하여 지원한 496만달러를 합산하면 1998년 3월까지 총 2,253만달러(200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1998년 3월 18일에는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을 허용하고,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을 허용하며, △언론사 및 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모금행사를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농산물 계약재배 및 합영농장 운영, 국수 및 아동용 식료품 공장 설립 등 생필품 분야에 대한 남북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 직접지원을 추진하여 북한의 지구 노력 유도에 기여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원물품의 반출은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지정기탁제를 활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재원조달 및 전문성 등 사업수행 능력과 북한과의 안정적인 대화채널 확보 가능성, 지정기탁제와 분배결과 확인 등 남북적십자 수준의 모니터링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98년 한해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방식을 통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5개 단체가 35억여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한편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1998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경에서 열려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제3차 구호물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3차 지원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총 935만달러 상당(옥수수 기준 5만 4천여톤)의 물품을 4월에서 6월에 걸쳐 전달하였다. 또한 9월부터는 3차분 추가물량으로 1,133만달러 상당의 옥수수과 밀가루, 분유 등을 지원하였다.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한우 1,001두를 6월 16일과 10월 27일 2차에 걸쳐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제1장 대복지원 추진현황

1999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3월~6월에 걸쳐 비료 4.5만톤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20여개 단체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281만달러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의 대복지원이 허용된 1995년 11월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민간차원의 대복지원은 총 6,184만달러(697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옥수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39만톤 상당이다.

1999년 2월 10일에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개별창구를 더욱 확대하여 민간차원 대복지원 창구를 다원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준법성·전문성·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외에 독자적인 대복지원 창구로 허용하고 기타 단체 및 개인은 기존과 같이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창구 다원화 조치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복지원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조치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업개발 등 민간단체의 개발지원사업이 좀더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복지원 절차의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번 조치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한국 이웃사랑회」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한적창구를 통해서 24개 단체가 157억원을 지원하여 1999년 한해동안 224억원(1,863만달러) 상당액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였다.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조치

1999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방향은 단순 식량지원에서 나아가 구호 및 개발사업을 통해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특히 어린이, 임신수유부 등 특수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민간단체별로 지원분야를 특화해가면서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9년 10월 21일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정하기 위해 「인도적차원의 대북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통일부 고시로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10월 27일 제정된 이 규정은 민간 대북지원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우선적 고려가 요청되는 분야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관련분야의 협력사업자로서 1년 이상 대북지원을 추진해 온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분배투명성을 상당수준 확보하고, 남북 직접교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며, △지원자금 규모는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이 자체 확보한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정하되, 그 용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구입비와 수송비 및 분배투명성 확보경비 등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제1장 대북지원 추진현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8개 단체 9개 사업에 대해 45.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농업, 보건의료분야 등 전문적인 지원분야로 특화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결과 확인과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방북활동도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에는 12개 독자창구를 통해 308억원, 한적창구를 통해 113억원 등 총 421억원(3,513만달러)을 지원하였다.

2001년 2월 8일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절차와 무상기증 농수산물 수송비 등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및 자금 집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2001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14개 단체에 7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5개 단체에 대해 76.6억원의 기금지원을 결정하였다.

2002. 12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원총액은 14개 단체의 18개 사업에 대해 124.6억원이며, 농수산물 지원 관련 수송비 지원액은 2001년 24.2억원, 2002년 15.8억원 등 40억원이 집행되었다.

2001년 민간차원 지원액은 19개 독자창구를 통한 558억원과 한적창구를 통한 286억원 등 총 844억원(6,494만달러)이며, 2002년은 25개 독자창구를 통한 551억원과 한적창구를 통한 90억원 등 총 641억원(5,117만달러)이다.

1995년 이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총액은 2,601억원(2억 1,308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북지원 총괄현황〉

단위 : 만달러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누계	
한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53,380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21,308
국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74,688
국제사회 (B)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27	187,496	
총계 (A+B)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3	49,264	39,219	262,184	
A/A+B (%)	80.7	4.5	15.2	9.5	11.6	38.5	27.5	34.0	28.4	

〈분야별 대북지원현황〉

단위 : 만달러 (괄호안은 백분율)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누계
일반구호	23,225	455	4,329	2,891	565	1,434	6,067	4,174	43,140
	(100)	(99)	(92)	(91)	(12)	(13)	(45)	(45)	(45)
농업복구		5	205	254	3,941	8,562	5,476	7,351	25,794
		(1)	(4)	(8)	(84)	(75)	(40)	(54)	(35)
보건의료			189	40	182	1,380	1,996	1,967	5,754
			(4)	(1)	(4)	(12)	(15)	(15)	(7)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74,6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대북지원 관련 주요일지

- 1995. 3. 7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대한 곡물지원의사 표명
 - 베를린 방문중 가진 독일 외교 3단체 초청연설시
 - * 1995. 5. 15 제44차 IPI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도 곡물지원의사 표명
- 1995. 5. 26 북한, 식량지원 요청
 -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리성록 위원장이 일본 연립여당의 방북단 대표들과 회담시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한국의 쌀도 조건없이 받겠다는 의사 표명
- 1995. 5. 26 통일원장관, 곡물 제공용의 발표
 -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
- 1995. 6. 17~23 쌀 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당국간 베이징회담 개최
 - 1995. 6월~10월 국내쌀 15만톤 지원
- 1995. 8. 23 북한 유엔대표부, 국제기구에 인도적 지원 요청
 -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 긴급구호 요청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료진 파견 요청
 - 유엔아동기금(UNICEF)에 5만달러 상당의 콩 원조 요청
- 1995. 9. 14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 발표

- 대한적십자사로 창구 단일화
- 쌀 지원, 개별기업체·언론사 참여, 대북 직접지원, 불특정 다수대상 모금 등은 제한
- 1997. 3. 31 대북지원 참여범위 및 품목확대 허용 조치
 - 기업체의 경제단체를 통한 지원 및 쌀(외국산) 지원 허용
- 1997. 5. 26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
 -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997. 7. 25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문제점 보완
- 1997. 8. 15 대북지원 4대방향 천명
 - 북한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실질협력 이 필요하며,
 - 「민족발전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하고,
 -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며,
 - 북한당국은 변화를 통해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1998. 2. 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서
 -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

- 1998. 3. 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 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성 모금행사 지원
- 1998. 3. 27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998. 4. 25 ARS방식을 이용한 대북지원 모금(사안별) 허용 조치
- 1998. 9. 18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을 직접 담당
 - 대한적십자사는 포장(적십자 표시) 및 대북 통보 담당
- 1999. 2. 10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
- 1999. 2. 19 민간단체 독자창구 최초 개설(유진벨 재단)
- 1999. 10. 21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 1999. 10. 27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규정
- 2001. 2. 10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절차 신설, 농수산물 수송비 지원근거 신설 등

제 2 장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추진절차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기초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증명서발급, 물자의 반출입, 대북지원사업자, 남북협력기금지원, 남북협력사업승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1.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한 주민접촉

가. 접촉의 개념

(1) 접 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접촉이란 남북한 주민 간에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개인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교환과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접촉승인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2) 남·북한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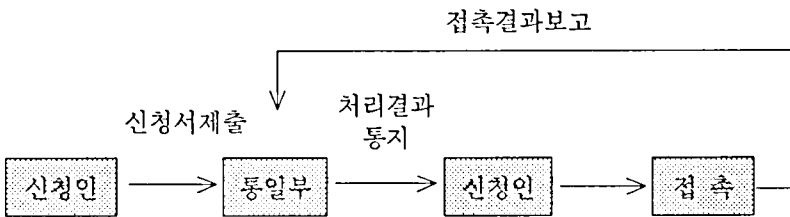
남한주민은 남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3) 주민접촉승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는 반드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관련자는 필요시 받으면 된다.

나. 북한주민접촉 신청

(1) 신청처리절차



(2) 신청시기

인도적 지원사업이 구체화되고 북측 상대방이 정해지면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한다.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

을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15일이다.

- ※ 북측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목적과 관련된 대강의 접촉범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접촉결과보고서 등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2003년(2월)부터 남북교류협력관련 민원업무를 On-line으로 신청·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북한주민접촉신청 메뉴에서 해당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내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On-line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서도 웹에서 출력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5) 신청서류 작성

- <북한주민접촉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 접촉목적 등을 기재하며, 1인 이상이 함께 접촉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작성한다.
- <신원진술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수 인이 함께 접촉신청을 할 경우에도 개인별

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신청사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지원사업과 관련된 참고자료 등이 포함된다.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계획서>는 북한주민접촉신청서에 기재한 접촉목적·접촉경위·접촉일정 및 장소, 지원사업 내용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며, <단체소개서>는 지원사업 추진주체의 사업추진능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조직의 연혁·현황·정관·주요활동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처리결과

승인시에는 접촉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승인유효기간, 유의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며, 불허시에는 불허사실 및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다. 접촉 결과보고

(1) 관련근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접촉 등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접촉 결과작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측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접촉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접촉결과 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서 On-line 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1) 승인 유효기간

북한주민접촉의 승인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며, 승인유효기간 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 횡수에 관계없이 접촉할 수 있다.

(2) 재신청

북한측과 협의 진행 중에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속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 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서류 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 과 접촉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3) 접촉목적 변경

인도적 대북지원목적의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고 승인유효기간내 에 있더라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목적의

접촉을 할 경우나 신청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후 신고

(1) 사후 신고대상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사후신고 방법

접촉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 제출한다.

2.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한 왕래

가. 남북한 왕래의 개념

(1) 남북한 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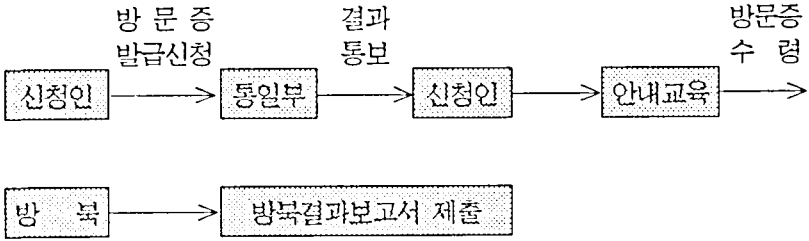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업협의를, 분배확인, 지원물자 수송 등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며, 최근에는 기증자들의 현장확인을 위한 단체방북도 성사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남북한 왕래의 개념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는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왕래승인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각각 북한과 남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1)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절차



(2) 신청시기

인도적 지원사업의 북측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북한지역을 방문기로 합의하고,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신변안전보장각서 포함)을 입수한 후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방북예정일은 발급신청의 처리기한(20일)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정하여야 한다.

(3) 신청방법

2003년(2월)부터 남북교류협력관련 민원업무를 On-line으로 신청·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해당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내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On-line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서도 웹에서 출력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 색 상반신 탈모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4매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5) 신청서류 작성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 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일시·방법 및 귀환예정 경로 등을 기재한다.
- <신원진술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군필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기관이 발행하는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 관련 문서를 의미하며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초청목적, 초청기관, 피초청인,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초청

장 및 신변안전 보장각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방북경위와 방북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방북활동계획서, 사업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6) 처리결과

북한방문이 승인될 경우는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불허시에는 불허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이다.

(7)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기간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유효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 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시방문증명서 발급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최장 3년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수

시방문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원사업의 성격이나 추진상황 등에서 수시 방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수시방문 신고

수시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류로는 북한방문신고서, 수시방문증명서, 초청장 또는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사본과 함께 방문목적은 설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면 제출한 수시방문증명서에 방문기간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한다.

(10) 재발급

방문기간 만료된 후에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 때와 같다.

<북한방문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방문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서류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방문증명서용 사진 2매>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등이다.

다. 북한방문 안내교육

(1) 목 적

북한방문 예정자들에게 북한방문과 관련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방북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 시기와 장소

교육은 방북증명서발급신청서 접수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일자에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처리 절차와는 별도로 방북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며, 대규모 방북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안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하며, 방북교육을 이수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방문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안내교육내용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북목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교육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4~8시간이 소요된다.

라. 출입심사

(1) 출입장소

남한의 출입장소에서 직접 북한을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소정의 출입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입장소는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공항·기타 장소(판문점 등)를 말한다.

(2) 심사절차

방문자는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북한 왕래시 유의해야 한다.

(3) 휴대 반출 및 반입 금지 품목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는 다음의 품목의 물품을 휴대품으로 남한 지역에 반입하거나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통일부 고시 제 99-1호).

(가) 반입금지품

-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② 화폐, 수표, 어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③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
- ④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⑤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나) 반출금지품

- ① 반입 금지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②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 되는 물품
- ③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④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다) 사전 허가를 요하는 물품

- ①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② 검역대상 물품
- ③ 전락물자 수출입 공고에 의한 수출규제 품목
- ④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마. 방북결과 제출

(1)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북한방문증명서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수시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장소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 반납하고,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 후 통일부에 반납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 있다.

(2)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북한방문 결과보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세부사항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 귀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자 인적사항, 방문기간, 방문목적, 주요 접촉인사, 방문일정별 방문지역 및 활동내용, 북한측 반응,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합의서, 의향서 등 북측과 체결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북한방문 결과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에서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바. 남한방문 절차

(1)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된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다.

(2) 신청서류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4매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3)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 초청과 관련된 행사계획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며, 나머지 서류는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사.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1) 재외국민의 범위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유학생·교환교수 등과 같은 단기체류자는 여기서 말하는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재외국민으로서 사전신고만으로 북한방문이 가능하다.

(2)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재

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결과보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사. 국내거주 외국인의 북한방문 등

(1) 외국인의 법률적용 범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주민(법인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3국적인(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일원으로서 법률 적용대상이 된다.

상기 법률 적용 대상인 외국인이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인의 북한방문 등 절차

외국인이 대표자인 국내법인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인 외국인이 사전에 반드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인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내법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북한주민접촉승인 등의 절차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의 북한주민접촉승인,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구비서류, 처리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3. 대북지원물자 반출

가. 승인대상물품

(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역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따라 무상으로 반출되는 인도적 지원물품은 품목이나 금액 등에 관계없이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주민이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북한에 보내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만, 인도적 지원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승인범위내에서 신고만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나. 승인절차

(1)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사항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물품의 반출승인은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직접 반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반출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는 반출대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출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반출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물품공급과 관련된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반출대행계약서 1부(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반출경위설명서, 이전 지원사항 등

(4) 신청방법

2003년(2월)부터 남북교류협력관련 민원업무를 On-line으로 신청·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북한 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북한반출승인신청 메뉴에서 해당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내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On-line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서도 웹에서 출력할 수 있다.

4.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가. 대북지원사업자

- 대북지원사업자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로서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부고시 제99-5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대북지원사업자는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남북 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대북지원사업의 범위

대북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다음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인도적 목적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①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주민들에게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 식량과 담요, 의류 등 기초 생필품을 지원하는 긴급구호사업으로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단체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②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농업개발 지원사업은 북한의 농업 생산력 복구와 생산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영농기자재지원과 같은 단순 물자지원사업에서부터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자금투여가 요구되는 종자개량, 생산기반 복구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향후 대북지원의 중심분야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국제옥수수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협력협회 등이 농기계수리공장, 짓

소·젓염소목장, 양계장, 산란종계장, 종자개량·보급, 연어자원보호·증식, 온실영농, 비료·비닐 등 각종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농업개발 지원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관리와 진행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

③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보건위생 상태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열악한 생활환경, 지속적인 영양부족, 의료시설 및 의약품의 미비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과 질병퇴치 및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굿네이버스, 남북나눔,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유진벨재단,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복지재단, 한국JIS, 한민족복지재단 등이 병원건립 및 현대화 사업, 제약공장 설비복구사업, 어린이영양센터 건립사업, 전염병 퇴치사업, 기생충 구충사업, 기초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지원사업과 현지에서 국수·빵·두유·영양식 등을 생산하여 어린이·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급식공장 운영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④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북한은 부족한 식량 증산을 위한 다락밭 개간, 딸감 생산을 위한 남벌 등으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되고, 이로 인한 홍수, 가뭄피해의

증가로 식량사정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며,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산림복구 사업과 환경보전 지원사업은 규모나 복잡성 면에서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형태의 지원이 추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의 여러 NGO가 협력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산림복구지원은 강원도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평화의 숲의 묘목지원사업 등이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⑤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인도적 취지에 적합한 분야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북지원사업자라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 사회문화분야나 경제분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등 그에 적합한 별도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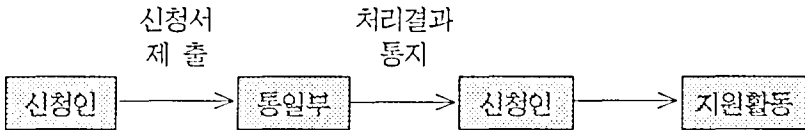
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적법하게 1년이상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자
- ②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함)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절차

(1) 지정절차



(2) 구비서류

- 단체소개서
- 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처리기간 : 20일

(4) 지정유효기간 : 별도의 지정 해제시까지

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해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가 다음중 한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사업자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②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③ 6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실적(접촉·방북활동 등 포함)이 없는 경우

대북지원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①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

대북 지원사업은 식량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분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혜대상, 지원품목, 추진방법, 지속가능성 등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요소들도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배투명성 확보에 노력

인도적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필요한 혜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배상황의 파악은 물론 분배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대북 지원에서의 분배투명성 확보는 상황이 점차 개선

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업분야나 지원품목의 선정 시에도 분배확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당분야를 추진할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조직·인원·재정 등에서 이를 감당한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능력의 판단은 장기적인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재정적 능력은 물론 인적·조직 면의 전문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젝트형태의 지원사업에서는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④ 다른 단체가 진행중인 기존사업도 감안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별·사업별로 전문화·특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원의 효과성·효율성 등의 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원분야를 선정할 때에는 다른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분야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가급적 중복되거나 경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분야에서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은 권장되는 방식이다.

⑤ 가급적 쉽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

대북 지원사업을 작고 쉬운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신뢰의 폭과 지원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충분한 신뢰감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과 인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인도적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품목을 지원

인도적 지원물품을 따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 등 상업적 교역물품과는 다른 기준에서 지원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물품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인지가 가장 우선적인 선택기준이 되어야 하며, 같은비용으로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원목표계층의 수요(Needs)에 적합한 지와 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여부 등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북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는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의 내용과 취지는 물론,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전반적인 여론동향도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⑧ 마지막으로, 인도주의 사업이라도 우리의 헌정 기본질서와 국가안 전보장, 공공복리와 공공질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5.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 기금지원 대상사업

(1)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사업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2) 대북지원사업중 다음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중치를 부여한다.

- 농업기반 복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증식 및 생산 등 농업분야 지원사업
- 전염병 퇴치, 기초의약품 지원, 의료체계 복구 등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 유아·어린이·노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 산림복구 등 환경개선사업,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사업

(3) 한 단체가 요건을 갖춘 여러 개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 사업은 2개 사업 이내로 제한한다.

나. 기금지원 신청

(1)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일괄 접수한다.

(2) 구비서류

-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서
- 대북지원사업 계획서
-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서
- 자체 재원확보 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포함)
- 분배투명성 확보계획서(북한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 포함)
- 대북지원사업자, 민법 또는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다. 기금지원 심사

(1) 요건심사

- 지원사업이 ①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 확보 ②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지 등 기금 지원대상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 요건 미충족 또는 기존 기금지원사업 단체중 투명성 확보 노력이 미흡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원자금 규모심사

-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기금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지원자금 규모산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 ② 대북지원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 ③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 ④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 ⑤ 분배대상 지역
 - ⑥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3) 기금지원금액 산정방법

- ① 사업계획에 의한 총사업비 확정(자체재원 + 기금신청액)
 - ② 기금지원상한액 설정(총사업비의 50%, 단체당 지원한도 이내)
 - ③ 심사결과를 반영한 조정액 산출(상한액 × 심사점수(%))
 - ④ 전년도 기금집행률을 반영한 기금지원액 산출(조정액 × 집행률(%))
 - ⑤ 부과조건 이행여부를 반영한 최종지원액 산출(기금지원액 × 부과조건 이행률(%))
- ※ 투명성 확보노력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단체 기금지원액의 5% 범위내의 금액을 가산지급(총 지원규모 범위내)

6. 인도지원분야 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의 개념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협력사업”이라고 정의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인도지원분야의 협력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하는 인도적 분야의 사업으로서 비영리의료시설의 건립·운영, 무상공급을 위한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개발지원사업 등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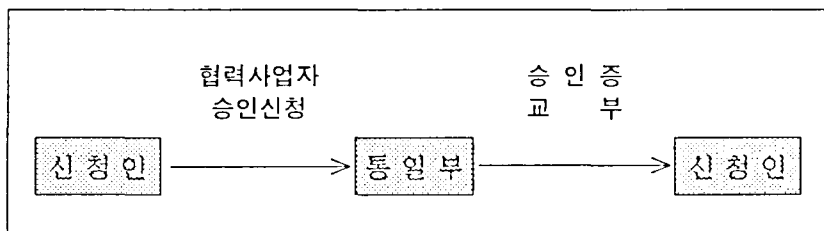
(3) 최근 대북지원의 형태가 단순 1회성 지원에서 자활능력회복을 위한 지속적 프로젝트사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이들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 협력사업자 승인절차

(1)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북한측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북한측 상대방과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구체화되면 당해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

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개인(단체)의 자격과 능력, 사업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서류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 협력사업 개요설명서 1부
- 북한측 당사자와의 의향서 사본 1부
- 국내 혹은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해당분야 사업실적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3) 신청방법

2003년(2월)부터 남북교류협력관련 민원업무를 On-line으로 신청·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회원

으로 가입한 후 협력사업(자) 승인 메뉴에서 해당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내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On-line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서도 웹에서 출력할 수 있다.

(4) 작성요령

- <협력사업 개요설명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당해 인도적 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서로 특별한 양식없이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며 사업내용, 목적, 추진경위, 사업추진 방식, 사업상대방, 소요경비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개략적 내용을 기술한다.
- <의향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로서, 북한측 상대방의 당해 협력사업 추진의사를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 명칭은 합의서, 협의서, 계약서 등으로 표기되며 사업내용, 규모, 사업장소, 당사자, 추진방식, 추진 일정, 경비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국내 혹은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은 협력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경험·전문성 등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5) 승인요건

- 협력사업추진이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
-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
- 사업추진 당사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

-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동종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영리목적 추구 및 과도한 대가지불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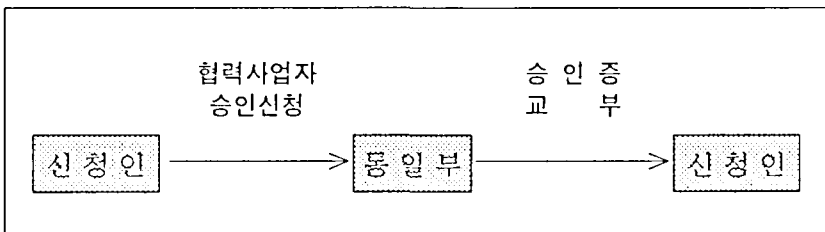
(6) 처리기한

〈협력사업자〉 승인은 원칙적으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내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되며, 승인시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증」이 교부된다.

다. 협력사업 승인절차

(1) 협력사업승인 신청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북한측 당사자와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 승인〉은 당해 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의 부합여부, 타 협력사업과의 경합 및 남북한간의 분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2) 신청서류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합의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타당성 조사결과 1부
- 단독투자의 경우 북한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3)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에는 추진경위, 주요내용, 추진일정계획, 소요경비 및 경비조달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당사자의 인적사항, 경력(기구인 경우 연혁), 활동실적 등을 기술한다.
-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합의서>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북한측의 책임있는 상대자와 최종 합의한 것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협력사업의 명칭
 - ②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 또는 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기구)명, 소재지, 임원의 구성 등
 - ③ 사업의 목적, 기간, 방법,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당사자간 자금분담률
 - ④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 불가항력의 사유

- ⑤ 공동저작의 경우 저작권의 행사, 양도, 대여, 소멸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협약서 내용의 이행보장」과 「협력사업 관련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4) 승인요건

-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사업관계자가 협력사업을 추진할만한 능력(기술, 자금, 조직 등)을 갖출 것

(5) 처리기한

협력사업 승인처리 기간은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내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6) 협력사업의 보고

협력사업자는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

결, 사업의 착수, 사업 진행상황(분기별), 사업의 만료 또는 약정이나 계약의 해지·해제, 분쟁 및 사고의 발생, 협력사업자(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협력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의 신청과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지원사업의 총 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내인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기타 통일부장관이 동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록

I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활동

II . 관 계 법 규

I.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활동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간단체 「독자창구」와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하는 두가지 경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여 자체계획에 의한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독자창구」라고 칭한다. 2003년 2월 현재 28개 민간단체가 「독자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단체들의 지원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소개순서는 편의상 '가나다' 순서를 따랐다.

1.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옥수수재단의 대북지원사업은 긴급구호보다는 지속적인 농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북한 농업과학원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남북공동농업기술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협력사업의 요지는 (1)장기적으로는 남측이 기술과 자본재를 제공하고, 북측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북한지역에 적응하는 우량옥수수 종자를 개발하여 옥수수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2)단기적으로는 남한산 교잡종 옥수수종자와 모본 원종(수원19호)을 제공하여 북한에서 잡종1대 종자를 생산, 곡물증산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며 (3)북한 농업의 과학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25개 지역연구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

2.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여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1,500개 협동농장에서 수인 19호와 북한산 우량종자인 화성1호, 은산5호 등과의 비교시험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옥수수재단은 지난 5년 동안의 연구와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저비료·저농약에 적응하는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이 우수한 우량종 옥수수의 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며, 2003년에는 북한이 4종의 우량종 옥수수를 '국가품종비교시험'에 공시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	담당자	윤성식 간사(peacecorn@ICF.or.kr)
주 소	(110-360) 증로구 와룡동 164-2 인산B/D 5층	
연락처	T : 3673-4835	F : 3673-4839

2.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는 맹인·농아 등 장애인 구제 및 이재민·난민 구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1979년 4월 21일 설립되어 1,664개 클럽과 7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매년 200억원 상당을 불우이웃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3년 2월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라이온스연합회는 1998 이후 다른 지원단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7억원 상당의 밀가루, 담요, 의류, 어린이영양제 등 긴급구호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평양 안과병원 건설용 자재와 굴삭기, 미니버스 등을 지원하였다.

한국라이온스연합회는 향후 평양안과병원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의약품, 의류, 식량 등 일반구호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라이온스연합회	담당자	박광식 사무총장
주 소	(110-756) 종로구 적선동 80 현대빌딩 507호	
연락처	T : 734-5111	F : 733-0309

3.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세계 10여개 저개발국가에서 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로써 1995년 3월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대북지원을 시작하였다.

굿네이버스는 1995년부터 빵, 옥수수, 밀가루 등 긴급구호물품을 중국을 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북한유엔대표부를 통하여 북한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창구로 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1998년부터는 그동안의 긴급구호지원에서 보다 지속적인 개발차원의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어린이 영양 지원을 위한 축산 개발 및 우유급식사업,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육아원 지원사업, 어린이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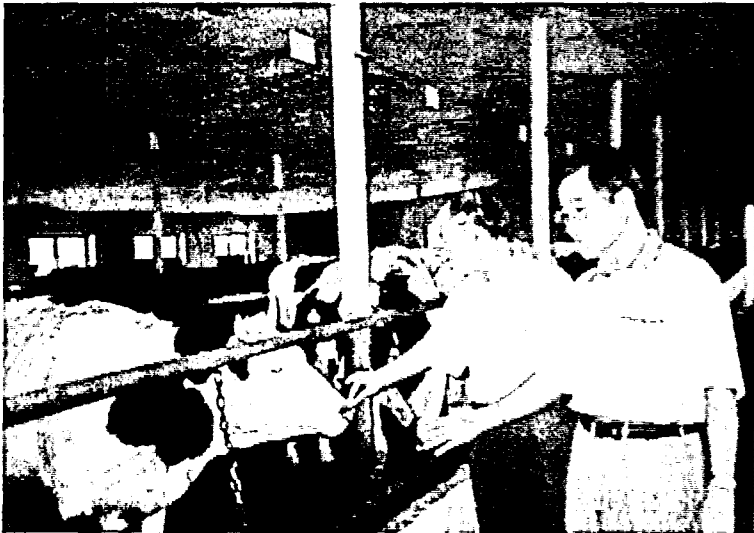
축산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평양, 남포, 사리원의 젖소 목장(3개), 협동농장(1개), 양계장(3개) 등에 젖소, 우유생산 관련 기자재, 축산관련 기술전수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침체된 낙농사업의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하고

3. 굿네이버스

있다.

육아원 지원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2000년부터 북한 내 12개 시·도의 14개 육아원에 수용중인 4,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분유, 우유 등 영양식 지원, 양육용품 및 학습교구·시설보수설비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여 어린이들의 영양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낙후된 보육시설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 질병퇴치사업은 2001년부터 평양시 제2인민병원내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연인원 10만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필수약품, 의료기자재, 아동병동 개보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열악한 북한의 의료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의 치료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안과병원 건립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젖소목장을 살펴보고 있는 관계자들(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현재 추진중인 건강증진과 질병퇴치, 영양개선, 축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혜대상을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굿네이버스	담당자	이윤상 실장(gnkpd@hanmail.net)
주 소	(121-828) 마포구 상수동 95-3 사회교육관 4층	
연락처	T : 338-0448, 338-0538	F : 338-0724

4.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남북강원도간의 산업·환경·학술·문화예술·체육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0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남북강원도가 합의한 연어자원 보호증식 사업,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은 북강원도 지역하천에 새끼연어를 방류하여 어획량 증대를 꾀하려는 사업으로 2001년 4월 7일 55만마리, 2002년 4월 8일 50만마리의 새끼연어를 각각 북강원도내 2개 하천(고성 남강, 안변 남대천)에 방류하였다. 또한 연어자원 보호증식을 위한 2단계사업으로 북강원도 안변군 남대천변에 연간 500만마리 생산규모의 연어부화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어부화장은 강원도에서 설계, 건설자재, 부화설비 등을 지원하고 북측에서 인력·건설기계·현지조달자재 투입 등 시공책임을 맡아 금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4.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강원도는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을 통해 남북강원도 상호간의 신뢰와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남북강원도 어민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동해안 지역의 연어회귀율을 높임으로써 동해안 어족자원의 증식기반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은 2001년 6월 8일과 2002년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ha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방제후 공동조사에서 90%이상의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북 산림관계자가 직접 만나 솔잎혹파리 방제에 관한 학술적·기술적 의견을 교환하고 방제기술과 방제요령을 전수하였으며 공동으로 시범방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강원도는 그동안의 협력사업을 통해 분단 강원도민의 동질성과 동포애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남북공동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사업추진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담당자	황병일 사무관(catchi@provin.kangwon.kr)
주 소	(200-02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남북협력담당관실	
연락처	T : 033-249-2183	F : 033-249-4556

5. 남북나눔(기독교 북한동포후원 연합회)

남북나눔은 영양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어린이 영양식 공급과 성장발육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남북나눔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지원 사업은 ①밀가루와 감자를 이유식으로 가공(평양소재 봉수국수공장)하여 분유와 함께 육아원과 탁아소,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 등에 공급하는 이유식지원 사업, ②수경재배단지(평양 두루섬 소재)에 교환용 비닐, 채소 씨앗 등을 공급하여 연중 재배되는 오이와 토마토 등을 육아원, 탁아소, 유치원, 병원 등에 공급하는 사업, ③겨울용 유아·어린이옷 지원사업 ④발육성장에 필요한 유아·어린이용품(젖병, 기저귀 등) 지원사업 ⑤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결핵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X-RAY 검진차량, 기초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의료용품 지원사업 ⑥어린이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육아원, 탁아소, 유치원의 텃밭 가꾸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기구(삽, 괭이 등) 지원사업 등으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240여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지원하였다.

남북나눔은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 영양식 공급과 성장발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나눔	담당자	신명철 국장(mcshin@sharing.net)
주 소	(110-470) 종로구 연주동 135-46 한국기독교회관 703호	
연락처	T : 745-5763	F : 763-6477

6.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는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식량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1998년 6월에 출범한 단체이다.

남북농업발전협력은 1999년 이후 북한에 대한 씨감자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2,000톤 이상의 씨감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또한 남북 농업협력 시범사업으로 북한의 단위협동농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축산업에 관련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기대한 사업실적이 나타나면 다른 협동농장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지원방식에 대해 북측과 합의하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씨감자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는 감자를 살펴보고 있는 관계자들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농발협은 향후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농업지원활동을 위한 민간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남북농업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범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농업발전 민간협력연대	담당자	안약천 국장(ycahn21@korea.com)
주 소	(137-130)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201	
연락처	T : 6300-8671(代)	F : 6300-8672

7.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1996년 6월 식량난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의 지원운동을 시작한 이래 분유,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0년부터는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두유생산 설비를 공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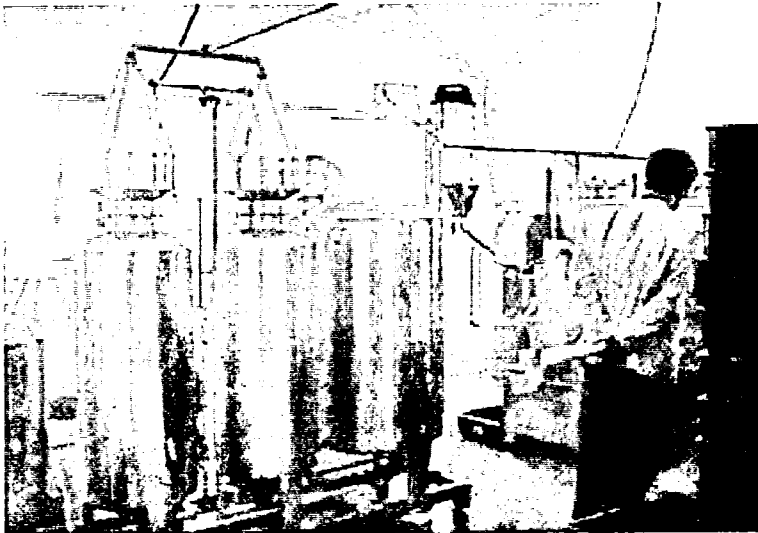
남북어린이어깨동무가 추진해온 주요 지원사업은 구충제·항생제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의약품 지원사업, 평양에 설치한 두유공장에서 생산한 두유를 매일 1만여명의 영·유아에게 공급하는 영유아 두유급식사업, 어린이 영양관련 질병치료와 연구를 위해 2003년 6월 개원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인 어린이영양증진센터 건립사업 등으로서, 1996년 12월 지원을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분유, 의약품, 설 탕, 밀가루 등 구호물품과 두유생산설비·자재 등 200억원 상당에

7.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달하는 물품을 지원하였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향후 평양 이외의 지역에 2개 정도의 두유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사업, 육아원 등 어린이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진행중인 구충제·항생제 등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 어린이 교류와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담당자	박진원 국장(nschild@yahoo.kr)
주 소	(110-180) 종로구 송현동 58번지	
연락처	T : 743-7942	F : 743-7944



평양에 설립한 공우유공장의 생산설비(남북어린이어깨동무)

8.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9년 11월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본부」로 처음 발족하였으며, 대북지원사업을 점차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2001년 3월 법인을 등록하였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역 특산물인 감귤이 동절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의 섭취가 부족한 북한주민들에게 주요한 식품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998년 100톤, 1999년 4,336톤, 2000년 3,031톤, 2001년과 2002년 10,090톤 등 총 17,557톤 가량의 감귤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당근 6,000톤도 지원하였다.

또한 감귤지원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후원자들이 현장



평양창광유치원을 방문한 관계자들(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을 방문하는 형식의 단체방북도 실시하여 2002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02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제주도민이 제주-평양간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의 실상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향후 감귤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담당자	김일두 차장(kid2714@hanmail.net)
주 소	(690-022)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24-3번지	
연락처	T : 064-726-5030	F : 064-726-5032

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해진 1997년부터 긴급구호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한 간접지원을 실시하였으나 2001년 8월 이후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그동안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 식량과 비료, 결핵약과 결핵검진차량, 방한복 등 의류, 온실 자재 및 농업용 비닐 등 물품을 공급하여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요청에 따라

2003년부터 4~5억원 규모의 평양신학원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식량, 의류 등 긴급구호성격의 지원을 지속하면서 농업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담당자	류태선 목사(pckso@diaconnet.or.kr)
주 소	(110-470)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연락처	T : 741-4358	F : 747-0043

10.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은 북한 농촌현대화를 통한 생산 증대 및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8년도부터 추진된 지원사업은 초기단계에는 인도적 물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농촌 현대화 지원으로 지원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98년 북한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젓 염소 보내기 사업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추진하여 겨울나기 의류지원, 감귤 보내기 등의 인도적 물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도 겨울나기 의류 보내기, 비료·농약·씨감자 등 농자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통일 손수레 보내기'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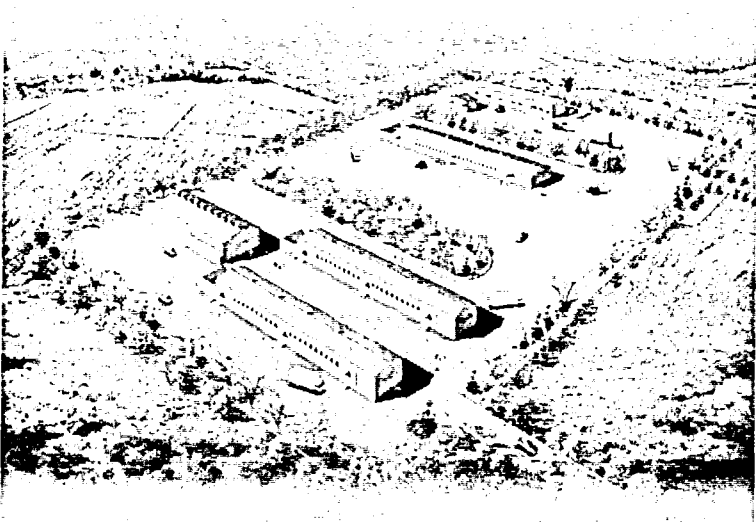
2001년에는 '통일새마을분무기'와 2차 '통일 손수레' 지원을 실시

10. 새마을운동중앙회

하는 한편, 북한 농촌현대화를 돕기 위해 150동에 이르는 비닐하우스 자재와 농기구를 지원하는 ‘통일새마을하우스 보내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경운기, 이앙기, 콤팩트 등의 지원과 함께 ‘북한 동포 겨울나기 내복 보내기’도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북한어린이 영양공급과 생산증대를 위해 ‘산란중계장 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향후 농촌현대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자재 및 시설, 농기구 및 농기계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담당자	황창영 팀장(hcyoung@dreamwiz.com)
주 소	(135-851) 강남구 대치3동 1008-4	
연락처	T : 2600-3663	F : 2600-3656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건설중인 산란중계장 조감도

11. 선한사람들

선한사람들은 빈곤과 질병, 재난 등의 구제와 의료활동, 교육·개발사업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 등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설립되어 1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2003년 2월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선한사람들은 1999년 이후 국제옥수수재단을 경유하여 비료, 옥수수, 자동차, 유아용의류 등 18억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결핵퇴치 및 필수약품 등 보건의료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개발과 일반구호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한사람들	담당자	남미희 팀장(ngo-goodpeople@hotmail.com)	
주 소	(150-010) 영등포구 영의도동 11번지 제2교육관 903호		
연락처	T : 783-2291~3		F : 783-2294

12.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남북 보건의료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6월 설립되었다.

12.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9월 어린이 영양제와 이유식 지원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 현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1년 말에는 국내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약설비(정제의약품 제조설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동안의 단순 완제의약품 지원을 넘어 새로운 지원분야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문 보건의료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의 특성에 맞춰 의료용품과 치과진료장비, 한방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인도적인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2003년 상반기에 어린이 시럽제 생산설비와 환제(한약제) 생산설비 지원을 필두로 하여 제약설비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한 제약설비의 지속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영양제, 지사제, 항생제 등의 원료의약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2년에 최초로 발간한 북한어린이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향후 연례적으로 발간하여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의 기회를 삼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담당자	김진숙 사무국장(woorene@netian.com)
주 소	강남구 역삼동 667-13 역삼빌딩 402호	
연락처	T : 3453-9756	F : 3453-9759

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기초로 하여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동포를 돕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민족이 서로 도우며 공동의 번영을 이루자는 목적 아래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대 종단의 지도자들과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여 1996년 6월 창립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7년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각계인사 만찬' 개최 등을 통해 북한 돕기를 위한 범국민적 호소를 전개하는 한편 옥수수 등 식량 지원, 의류, 의약품, 비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급구호차원의 지원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일반 구호 사업과 병행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생산체계를 복구할 수 있는 농업 및 축산협력사업, 보건의료협력사업,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 아동급식 지원 사업 등 중장기적 계획을 가진 협력사업으로 지원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협력 및 농기계수리공장 운영 사업은 농업협동조합,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젓염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사업은 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CCC)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 등 국내 주요 보건의료협회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이후 400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원 물품에 있어서도 각종 협력사업 관련 물자와 함

14. 원불교

계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향후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협력사업 형태의 대북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대북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담당자	강영식 국장(ksmseoul@ksm.or.kr)
주 소	(110-522) 종로구 명륜동2가 17-5 해명빌딩 4층	
연락처	T : 734-7070	F : 734-8770

14. 원불교

원불교는 교리정신을 바탕으로 민족화해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동포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아기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불교는 2000년 12월 북경에서 만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원협조를 의뢰 받고, 2001년 3월 금강산에서 원불교의 대북 지원창구 개설에 대해 협의하데 이어 2001년 8월 평양에서 대북지원 창구개설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체적인 대북지원을 시작하였다.

원불교는 1995년 9월 15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수재민돕기 성금으로 미화 12,500달러를 지원한 이래 총 40여 차례에 걸쳐 물품 및 현금을 다른 지원단체에 기탁하는 형식을 통해 지원한 바 있

으며, 2001년 9월 28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이후에는 2001년 10월 23일 그 첫 사업으로 원불교여성회에서 분유를 지원한 이후 담요, 의류, 아기기저귀 등 건강유지와 월동을 위한 물품 23억5천여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원불교에서는 앞으로 '한 울안 한 가족 한 형제'라는 정신 아래 남북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민간교류사업, 평양에 빵공장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 북한의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무료한방진료와 의약품을 전달하는 사업,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불교	담당자	손성진(lib386@hanmail.net)
주 소	(137-130) 서초구 양재동 6-9 원불교 강남교당	
연락처	T : 063-850-3151	F : 063-842-3274

15.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1994년 황해도 불타산 목장에 비육우 60두와 평양 제3병원에 환자용 침상 500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기로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식량난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1995년 밀가루 1천톤 등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대 이어, 식량난으로 인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996년 북한 최초의 국수공장을 세우고 인근지

15. 월드비전

역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한끼씩의 국수 식사를 제공하였다. 국수공장은 현재 평안남도 개천, 평안남도 안주, 평안북도 선천,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신창 등 총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만성적인 식량난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긴급구호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여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채소 및 씨감자생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건설한 만경대 채소생산온실(평양 만경대구역, 1000평)과 2000년에 추가로 건설한 두루섬 채소생산온실(평양 두루섬지역 1,500평)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생산하여 인근 탁아소와 병원, 학교 등에 분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하고 척박한 지질에서도 비교적 생산량이 많은 작물인 감자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씨감자를 보급지원을 추진하였다. 2000년부터 설치가 추진된 씨감자생산사업장은 현재 평양 농업과학원을 비롯하여 양강도 대흥단군,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함경남도 함흥 등 5개 지역에 건설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씨감자는 감자재배면적 20만ha에 공급되어 4백만톤 이상의 감자가 생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월드비전은 씨감자를 비롯한, 채소, 과수 분야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에 걸친 남북협력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월드비전	담당자	최경석 팀장(@worldvision.or.kr)
주 소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연락처	T : 783-5161(440)	F : 782-0727



씨감자 생산온실 내부의 모습(월드비전)

16. 유진벨재단

유진벨재단은 인도주의적 제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국과 미국에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95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돕기 위해 쌀, 콩, 옥수수 등 농산물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7년 북

16. 유진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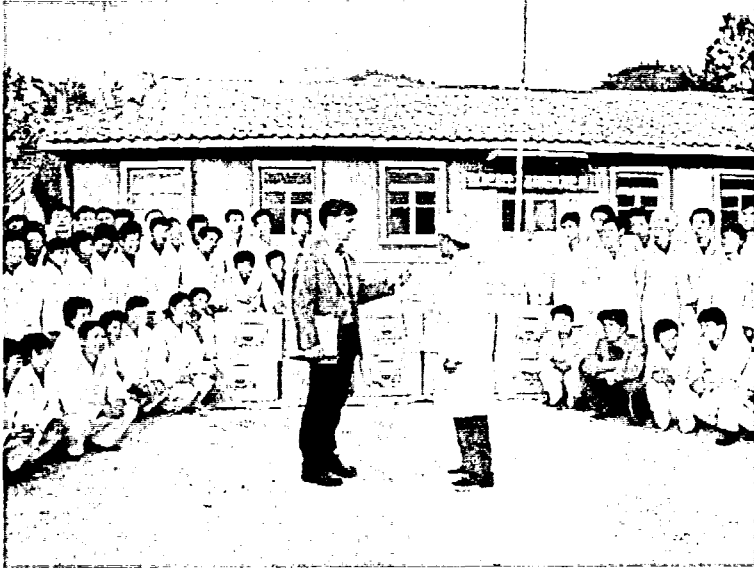
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결핵퇴치에 관한 공식지원요청을 받고 본격적인 대북결핵퇴치사업을 펴왔다. 현재는 결핵퇴치와 더불어 기타 전염병 예방과 치료, 수술실 개선 등 일반 보건의료지원으로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유진벨은 그동안 결핵약, 검진차량, x-ray기계 및 각종 의약품과 의료기구 등 약 250억원 이상의 물품들을 지원하였다. 현재 북한에 있는 83개의 결핵기관 중 60여 곳에 지속적으로 지원물자를 보내고 있으며, 35곳의 기관과는 자매결연을 맺고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유진벨은 여러 의료지원사업들 중 특히,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 퇴치에 주력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인 질병치료뿐 아니라 영양소의 기능을 되살려 북한 내 모범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진벨은 지원물품이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분배투명성의 확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핵 외 북한의 일반의료체계를 복구·개선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유진벨은 장기적인 대북지원 대책으로 북한 전역의 결핵예방원과 영양소의 환자들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진행중인 결핵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북한 내 만연하고 있는 다른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수술실 지원, 병원 환경 개선, 보건교육, 의술교류 등 일반의료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진벨	담당자	조일 국장(ilcho@eugenebell.org)
주 소	(121-210) 미포구 서교동 395-166 서교B/D 605호	
연락처	T : 336-8461	F : 3141-2465



요양소에서 결핵약품세트를 전달하는 관계자들(유진벨재단)

17.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남북한 종교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협력사업,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및 종교 행사개최사업, 북한동포 돕기 및 식량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년 2월 12일 설립된 단체로서 1995년 이후 긴급구호차원의 식량지원을 위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1997년 12월 설립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에서 하루 7,000여 그릇의 국수를 생산하여 인근지역 학교와 병원의 어린이,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1997년 이후 금강국수공장 운영에 필요한 밀가루와 조미료를 중심으로 하여 의약품과 의류 등 생필품을 포함하는 지원 물품을 40여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앞으로 매월 60톤 이상의 밀가루를 금강국수공장에 지원하여 생산된 국수를 각급 학교, 병원 등에 공급하는 식량지원사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의류, 의약품, 생필품 등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생필품지원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차원의 불교교류의 일환으로 사찰 및 문화재 복원사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리원금강국수공장에서 국수를 생산하는 과정(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국평화 통일불교협회	담당자	이지범 국장(bubtaga@orgio.net)
주 소	(110-170) 증로구 건지동 83번지	
연락처	T : 735-5558	F : 735-5564

18.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1995년 3월 1일 설립된 단체이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사업 초기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돕기 위해 밀가루, 옥수수, 어린이 영양식, 옷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북한에 국수공장 세 곳을 건립하고 국수공장 운영에 필요한 밀가루와 옥수수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밀가루는 공장마다 50톤씩 매달 15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평양시 만경대구역과 남포시 천리마구역, 황해남도 신천군에 소재한 3개 국수공장에서 생산된 국수는 지역의 노약자, 병원, 학교, 탁아소,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매달 약 3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다년간의 지원활동을 통해 북측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수공장 사업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향후 식량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19. 평화의 숲

주민들도 삶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담당자	박창호 과장(ppter@catholic.or.kr)
주 소	(100-022) 중구 명동2가1번지 카톨릭회관 609호	
연락처	T : 727-2413	F : 754-0067



평양옥류국수공장에서 밀가루반죽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관계자들(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19. 평화의 숲

북한의 부족한 식량 증산과 쌀감 생산을 위한 과도한 목재벌채로 인한 산림황폐화, 그리고 이에 따른 홍수, 가뭄피해 증가, 농경지 유실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산림 복구라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평화의 숲은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북한당국도 1997년 12월 UNDP에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원탁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1차 원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농업복구와 환경보호 분야의 개발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의 숲은 1999년 3월 창립 직후 북한의 「아태위」와 산림 복구 사업 지원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12차에 걸친 지원과 4차에 걸친 남북 산림분야 전문가들의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지원 물자는 총 600만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종자(165kg)와 묘목(62만 본), 산림용 비료23톤, 농약, 양묘용 장비 4,000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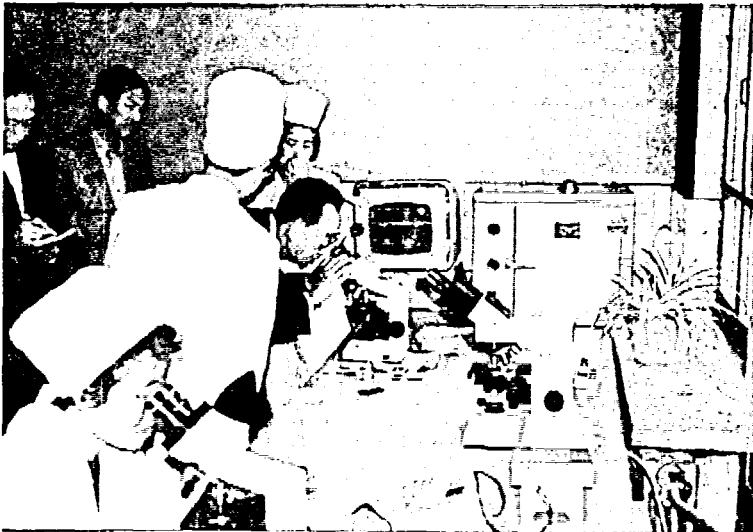
평화의 숲은 그동안의 일회성 물자지원에서 나아가 북한이 산림 복구를 위한 묘목을 자체 생산하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묘 기반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우선 2003년에는 5개년 계획으로 평양과 고성에서 시범적인 양묘단지를 조성하여 2,50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계획이며, 2004년에는 남포, 사리원, 은율, 원산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화의 숲	담당자	조민성 국장(ffp@chollian.net)
주 소	(130-712)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 임업연구원내 평화의 숲	
연락처	T : 960-6004	F : 960-6005

20.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관리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통해 북한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대북지원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협회는 1999년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기생충교육 등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옴에 따라 “장내기생충진단지침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북한의 낙후된 기생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도 250만명분, 2001년도 256만명분, 2002년도 200만명분의 구충약을 조선의학협회를 통해 공급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어린이 구충사업에 대한 기술 전수 및 방안 협의, 기생충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교



평양의대 병원에서 현미경 검사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관계자들(한국건강관리협회)

환, 구충약품 분배과정의 투명성 및 기생충관리사업 추진체계 등 제반 여건 파악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향후 기생충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공동검사 실시, 전문학자 교류 및 연구결과 공동발표, 간흡충 등 특수 기생충 조사연구사업 실시, 기생충관리 성공사례 및 학생 등 집단관리와 관련된 행정경험 전수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담당자	황의혁 과장(ehhwang@chollian.net)
주 소	(157-794) 강서구 화곡6동 1097번지	
연락처	T : 2601-6141~5	F : 2602-3816

21.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8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해외구호 NGO로서 북한을 비롯한 세계 30여개국에서 긴급구호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994년 평양 제3병원에 10만불 상당의 국산 의료장비 지원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식량, 의류, 의료장비, 젓염소, 수경재배 등 총 15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대북지원사업은 1) 1995년 의류지원을 시작으로 분유, 밀가루, 분유 등 식량과 씨감자, 담요 등을 지원하는 일반구호사업, 2) 1994년 X-Ray기기를 지원한 이래 미국의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 한국의 남북나눔과 협력하여 평양 제3병원 등에 의

22. 한국복지재단

료장비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사업, 3) 남북나눔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평양 두루섬의 수경재배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협력하는 젓염소 보내기사업, 북한접경 중국지역에 설립한 비료공장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함경북도 무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비료지원사업 등 농업개발지원사업 등이다.

한국기아대책기구는 2003년 1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대북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온 일반구호사업, 개발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미국·캐나다·일본의 기아대책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담당자	김희숙 실장(nancy@kfhi.or.kr)
주 소	(135-955) 강남구 청담동 111	
연락처	T : 544-9544(교환 460)	F : 517-4767

22. 한국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은 2001년 2월 “북한동포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내의 보내기”를 계기로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평양 제2인민병원 아동병원과 강계, 희천, 개성, 평성, 함흥 등 5개지역 육아원 아동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단이 어린이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물품은 육아원 아동

(0-4세)들을 위한 분유, 밀가루 등의 영양식과 의약품, 의료기기, 보수설비 및 자재 등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에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은 2002년 5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이후 컨소시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어린이 질병퇴치·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은 향후 북한어린이 질병퇴치·건강증진을 위한 컨소시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평양에 빵공장을 설립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빵 급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담당자	박소형 간사(sohyuung_park@kwf.or.kr)
주 소	(110-170) 중구 무교동 95 한국복지재단 11층 기획조사실	
연락처	T : 757-2915	F : 318-5681

23.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999년 11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인도적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2년 9월부터는 “북한 흑한 지역 어린이 월동용품 및 급식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그동안 종단이 주축이 되어 모금한 '통일기금' 등을 기반으로 흑한지역(자강도, 양강도 중심) 어린이들을 위한 방한

24. 한국제이티에스

외투, 내의 등 어린이 월동용품 지원과 불교계의 성인이 담긴 밀가루 등 어린이 급식용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발육개선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북한내 불교전통사찰에 대한 단청재료지원, 금강산 신계사 복원 등의 교류사업을 통해 종단차원의 민간종교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혜지역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지원물품의 분배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불교교류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담당자	김석우 과장(dain22@orgio.net)
주 소	(110-140)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2층	
연락처	T : 732-4885	F : 737-7872

24.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제이티에스는 1999년 3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어린이 구호사업, 농업기술지원사업, 긴급구호 및 문화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구호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9월 개시하였으며, 라진-선봉지역 116개 탁아소(0-4세), 유치원(5-7세) 어린이 11,000여명, 함경북도 고아원(0-17세) 어린이 4,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식을 비롯하여 의류, 어린이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라진에 어린이영양식 공장을 설립하여 영양식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지원사업은 라선시(나진-선봉경제특구), 함경북도 온성군, 경성군, 황해북도 연탄군 등을 대상으로 비료, 농업용 비닐, 옥수수 종자, 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8년 3월 이후 총 4,000여 정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보급, 재배방법의 개선지원 등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긴급구호 및 문화재 지원사업은 함경북도 회령군, 경성군, 명천군지역의 양로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식량 등 구호품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재 복원을 위해 단청 안료, 불사 도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호지원은 1997년 이후 30여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문화재사업은 2000년 칠보산 문화재복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제이티에스는 향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대상지역과 수혜계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지원사업은 취약계층지원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지역의 형편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곳으로 대상으로 지원하고, 긴급구호사업은 함경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지원수요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제이티에스	담당자	이지현 국장(jts@jts.or.kr)
주 소	(137-073) 서초구 서초3동 1585-6 정토회관 2층	
연락처	T : 587-8995	F : 587-8998

25.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1982년 12월 ‘북한선교부’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여, 1999년 10월 새롭게 발족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천하려는 취지에서 각 교구마다 민족화해위원회를 두고 직·간접적인 인도적 대북 지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화해와 나눔」誌 발행, 심포지움 및 전국 네트워크 개최, 의식화운동 등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교회 안팎의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주교회의 및 14개 교구와 소속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총 174억여원에 이르는 지원물품을 북한에 공급하여 식량난에 처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고 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앞으로도 인도적 사랑이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 각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함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각 교구를 연계하여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일시적 지원이 아닌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인적유대중심의 사회적응지원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담당자	로마나수녀(gommiri@kornet.net)
주 소	(100-022) 중구 명동2가1번지 카톨릭회관 609호	
연락처	T : 756-2781-2	F : 756-2780

26. 한민족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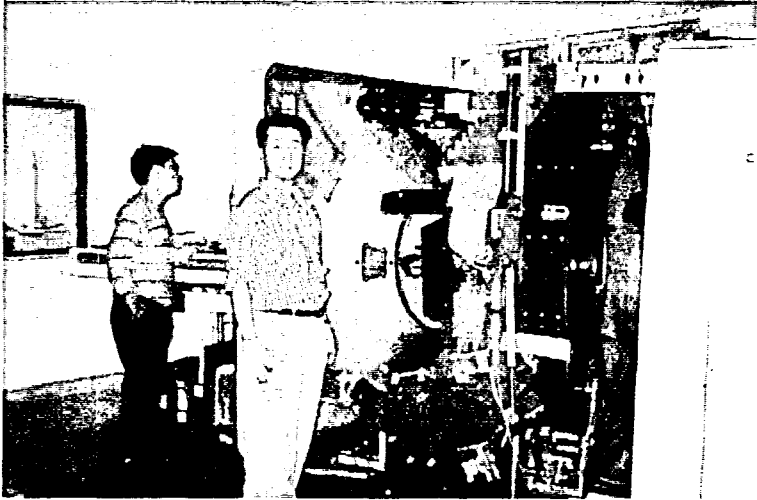
한민족복지재단은 1991년 봄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민족복지재단이 어린이 돕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첫째 어린이병원 현대화사업으로 북한 13개 도 소재지에 있는 도급 소아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의료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어린이 급식사업으로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빵 공장을 설립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생 15,000여명에게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어린이심장병센터 설립사업으로 평양의 학대학병원 구내에 어린이심장병센터를 설립 중에 있으며, 이미 의료진이 여러 차례 방북하여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을 성공리에 시행한 바 있다. 넷째는 어린이 집단구충사업으로 인민학교 학생 250만 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박멸사업을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는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사업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각종 치료약품과 의료용품을 조선의학협회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에 지원하고 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혜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성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27. 21세기통일봉사단

한민족복지재단	담당자	박헌석 행정실장(phyunseak@yahoo.co.kr)
주 소	(100-855) 중구 장충동2가 186-28 국제패션B/D 5층	
연락처	T : 2275-9814	F : 2272-9814



어린이심장병센터에 CTsystem을 설치하고 있는
관계자들(한민족복지재단)

27. 21세기통일봉사단

(사)21세기통일봉사단은 1997년 4월 17일 설립된 이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어린이 및 노약자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21세기통일봉사단은 1998년 '북한동포돕기 북한 물산전' 개최를 계기로 식용유 10만 리터를 북한에 전달하였으며, '북한 저명화가 초대전'을 개최하여 북한의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10컨테이너에 달하는 '북한어린이돕기 건빵보내기운동'

을 전개하는 한편, 어린이원구(레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20컨테이너 상당의 건빵과 100톤의 그림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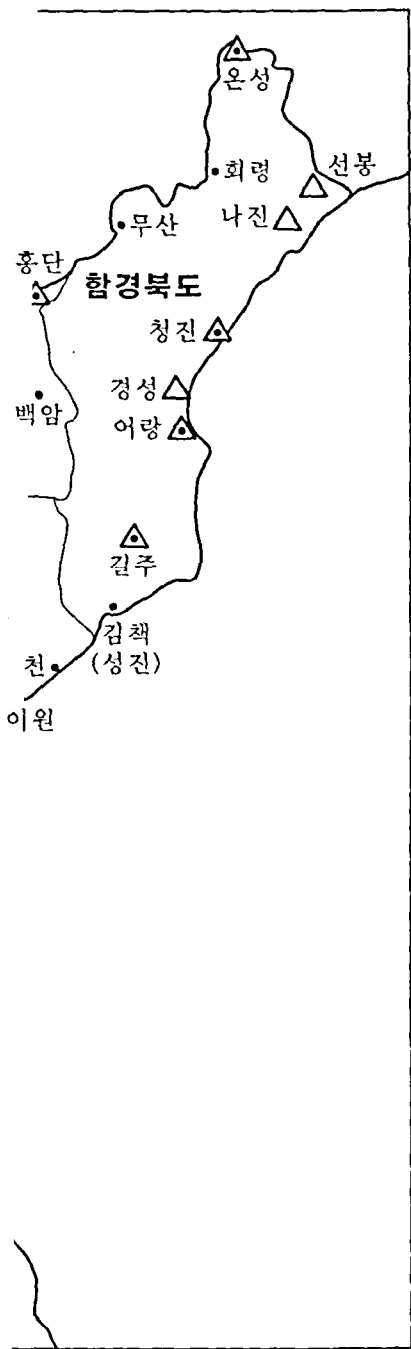
21세기통일봉사단은 향후 북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보다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보다 낙후된 곳의 어린이와 노약자, 나아가 임신부나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통일봉사단	담당자	오형호 차장(quetal@unitel.co.kr)
주 소	(140-210) 용산구 한남동 737-35번지	
연락처	T : 749-4706, 749-3434	F : 749-4708

〈 민간지원단체 주요 사업지역 분포도 〉

- 국제옥수수재단
 - 옥수수 시험장 : 경성, 어랑, 길주, 북청, 신흥, 함흥, 정주, 곡산, 운전, 용산, 평성, 개천, 평인, 은산(2곳), 해주, 청단, 황주, 곡산, 통천, 원산, 남포, 평양(4곳)
- 굿네이버스
 - 축산지원사업 : 남포(2곳), 평양(2곳), 사리원
 - 육아원 지원 : 남포, 해주, 사리원, 원산, 혜산, 청진, 평양, 개성, 평성, 희천, 강계, 함흥, 신의주, 용천
 - 의료지원 : 평양
- 남북나눔
 - 국수공장 : 평양
- 남북농업발전민간협력연대
 - 씨감자 생산사업 : 온성, 대흥단, 삼지연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두유급식사업 : 평양
 - 어린이영양증진센터 : 평양
- 새마을운동중앙회
 - 양계장 : 평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제약연구소 : 평양
 - 농기계수리공장 : 평양
 - 염소목장 : 봉산
 - 아동급식사업 : 평양, 사리원, 정주
- 월드비전
 - 국수공장 : 개천, 안주, 선천, 원산, 신창
- 씨감자 생산사업 : 평양, 정주, 대흥단, 배천
- 채소생산사업 : 평양(2곳)
- 유진벨재단
 - 결핵퇴치사업 : 온성, 회령, 무산, 청진, 어랑, 길주, 김책, 대흥단, 백암, 혜산, 갑산, 후창, 단천, 이원, 북청, 흥원, 함흥, 함주, 정평, 정동, 중강, 만포, 강계, 전천, 희천, 신의주, 염주, 삭주, 구성, 선천, 곡산, 정주, 개천, 안주, 문덕, 북창, 양덕, 평성, 평양, 남포, 송림, 괴일, 은륜, 신천, 해주, 청단, 배천, 황주, 사리원, 수안, 평산, 토산, 개성, 장풍, 판문
- 조국평화통일분교협회
 - 국수공장 : 사리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국수공장 : 남포, 신천, 평양
- 평화의 숲
 - 양묘장 : 평양
- 한국제이티에스
 - 어린이영양식공장 : 라진-선봉
 - 농업기술지원 : 라진-선봉(8곳)
 - 국수·생필품지원 : 청진
- 한민족복지재단
 - 어린이급식 빵공장 : 평양
 - 어린이병원 현대화사업 : 평양, 신의주, 남포
 - 어린이심장병센터 : 평양





● : 유진벨 결핵사업지역

II. 관련법규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정부조직법)
-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출입국관리법)
- 1994. 12. 31 법률 제4850호 (대외무역법)
- 1996. 12. 30 법률 제5211호 (대외무역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 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 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 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 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 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

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 12. 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제13269호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 12. 6	대통령령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15	대통령령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1998. 10. 23	대통령령제15920호
	1998. 12. 31	대통령령제15985호
	2001. 10. 31	대통령령제1739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 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수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권)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그가 발급 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등)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북한방문증명서중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 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의2(접촉승인유효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승인을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20조(특례 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의 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의2(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 <삭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협 력 사 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 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삭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 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 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3호, 2002. 3. 4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북한방문신고)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7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에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북한방문안내교육) ①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

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2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 7 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 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8 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 9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승인유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 생략

* 별지서식(제1호~제13호) : 생략

[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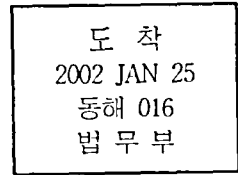
심 사 확 인 인 (제10조제2항 관련)

(예 시)



(규격 30mm×20mm)

(예 시)



(규격 30mm×20mm)

4. 南北協力基金法 [1990. 8. 1 法律第4240號]

- 改正 1990. 12. 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3. 12. 31 法律第4675號(國債法)
1996. 12. 12 法律第5170號(財政融資特別會計法)
1997. 12.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
整備에관한法律)
1999. 5. 24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1999. 12. 31 法律第6075호(國債法)

第 1 條(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第2條 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 3 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4 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3. 12. 31>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の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

金 〈改正 99. 12. 31〉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 5 條(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 할 수 있다. 〈改正 90. 12. 27, 96. 12. 12〉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 12. 27, 97. 12. 13〉

第 6 條 削除 〈93. 12. 31〉

第 7 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90. 12. 27, 99. 5. 24〉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 12. 27〉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 12. 27, 97. 12. 13, 99. 5. 24〉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0. 12. 27〉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남북협력기금법

第 8 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改正 93. 12. 31>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等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력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償還 <改正 99. 12. 31>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 9 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改正 90. 12. 27>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

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改正 90. 12. 27>

③會計關係職員等の責任에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0. 12. 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 12. 27>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改正 90. 12. 2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改正 90. 12. 27, 96. 12. 12>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

4. 남북협력기금법

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0. 12. 27>

附 則<99. 5. 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9. 12. 31>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 2 條(國債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以下省略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제13237호]

- 개 정 1991. 2. 1 대통령령제13269호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9. 5. 24 대통령령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자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4. 12. 23>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생당시의 국·공채 및 보
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
한다. <개정 94. 12. 23>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
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4. 12. 23>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
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
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 2. 1>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
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2. 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3. 3. 6, 94. 12. 23>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 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개정 99. 5. 24>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 2. 1>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 8 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4. 12. 23〉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4. 12. 23>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2. 1>

부 칙<99.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1. 3. 27 총리령제384호]

개 정 1998·6·1 통일부령 제3호(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개 정 2003·2·6 통일부령 제17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억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 2의2.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외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2003.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991. 4. 17 통일원고시제91-1호)

-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남북한왕대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 1999. 10. 27 통일부고시 제99-4호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2003. 2. 6 통일부고시 제2003-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위탁수수료)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2003·2·6 개정>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 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상지원

제 1 절 주민왕래 지원자금

제 9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박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 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 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98·12·31>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 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계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손실보조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년도 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 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98·12·31>

제34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 삭제 <98·12·31>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 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7조 삭제 <98·12·31>

제48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대출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2003·2·6개정>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빙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조건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99·10·27>

제51조 삭제 <98·21·31>

제52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 대출 등

제53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6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 <삭제, 99·10·27>

제54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종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무보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 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 손실보전

제58조(손실보전 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59조(손실보전신청 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

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0조(보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용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조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1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65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98·12·31>

제66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제67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생략

* 별지 (제1호 - 제15호 서식) : 생략

8. 인도적대복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예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복지원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대복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복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복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대복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적법하게 1년이상 지속적인 대복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자
2. 지속적인 대복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 3 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 소개서
2.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 5 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6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접촉, 방북활동

8.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등 포함)이 없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 7 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3.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 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6.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7. 기타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 8 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제 9 조(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통

8. 인도적대복지원사업처리예관규정

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지원 결정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가 기금지원사업의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사업의 내용변경, 시기조정, 추가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등) ①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

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 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등) ①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인 법인과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조작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

8. 인도적대복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남북협력기금지원신청서

①신 청 인 (단 체 명)	한글 : 한자 :	②대표자	
③주 소	(TEL) (FAX)		
④사 업 명			
⑤사업상대자			
⑥기금신청금액	총소요자금 :		
	자체재원확보액 :		
	기금지원신청액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도적차원의대복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대복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1부 3.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 1부 4.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 상대방과의 의향서 등 포함) 1부 5.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통 일 부 장 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80g/m²)

9.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1990·8·13 통일원고시제90-1호 }

전면개정 1998·12·31 통일부고시 제98-4호

개 정 1999·5·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 지역을 직접출입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 3 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제 4 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 5 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제 6 조(물품의 보관)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 7 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1998. 5.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 13호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 개정에 관한 고시)
 개정 1998. 10. 26 관세청고시 제98- 59호
 개정 1999. 5. 27 관세청고시 제99- 22호
 개정 2002. 3. 28 관세청고시 제02- 1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2조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

는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 4 조(신고대상물품)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휴대품인정범위(연도별 4회, 1회당 전체취득가격 총액 US \$300상당액)를 초과하는 물품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반입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5.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7.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8.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9. 앵속·아편·코카인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10. 동물(고기·가족·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

10. 남북한왕래지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류·농림축수산물

1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 응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2.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②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 등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반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방법) ①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도하게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통관

제 7 조(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 ①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 목적, 체재기간,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전체취득가격 총액이 US \$300상당액 이내로서 여행자휴대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되, 연도별 4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에 계기된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이는 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된다.

1. 주류 : 1병 (1리터 이하)
2. 담배 : 1보루(엽권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
3. 향수 : 2온스
4. 농산물(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참 기 림 5kg
 - 참 깨 5kg
 - 꿀 5kg
 - 고사리, 더덕 5kg
 - 잣 1kg
 - 기 타 5kg(품목당)
5. 한약재(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인삼 300g
 - 녹용 150g

10.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 기 타 3kg(품목당)

③(삭제)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금지물품(별표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②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별표2)
2.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 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7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반입이 규제되어 반출·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 보관증(별지 제2호 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과 세

제10조(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 인정범위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7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 및 남북교역물품통관 관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인정범위 등

제11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와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생략

10. 남북한왕래자취대품통관에관한고시

(별표 1)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물품
-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생략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2002. 10. 24 통일부고시 제2002-2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 3 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4. 반입물품으로서 컴퓨터

5. 영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제 4 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 5 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 6 조(반출·반입승인 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 <2002. 10. 24>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양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별표1)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1-99-9070	미꾸라지(환어)
21	0306-14-3000	꽃게(냉동)에 한함.
22	0306-14-9000	게(냉동/붉은대게, 대게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에 한함)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4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25	0306-24-1090	계(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계, 대계암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에 한함)
26	0307-29-1000	가리비(냉동)
27	0307-49-1020	오징어(냉동)
28	0307-59-1020	낙지(냉동)
29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0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1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2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3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5	0402-91-1000	무당연유
36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7	0402-99-1000	가당연유
38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39	0403-90-1000	버터밀크
40	0404-10-1010	유장분말
41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2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3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44	0409-00-0000	천연꿀
45	0410-00-3000	로얄제리
46	0701-10-0000	감자(종자용)
47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48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49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50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1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2	0710-80-2000	마늘(냉동)
53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4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5	0712-20-0000	양파(건조)
56	0712-90-1000	마늘(건조)
57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8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9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60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61	0714-20-1000	고구마(신선)
62	0714-20-2000	고구마(건조)
63	0714-20-3000	고구마(냉장)
64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65	0714-90-9090	서류(기타)
66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67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8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9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70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1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72	0810-90-3000	대추(신선)
73	0813-40-2000	대추(건조)
74	0901-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5	0901-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6	0910-10-0000	생강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77	1003-00-9010	겉보리
78	1003-00-9020	쌀보리
79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0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1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2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3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4	1006-10-0000	벼
85	1006-20-1000	메현미
86	1006-20-2000	찰현미
87	1006-30-1000	맷쌀
88	1006-30-2000	찹쌀
89	1006-40-0000	쇄미
90	1007-00-1000	수수(종자용)
91	1008-10-0000	메밀
92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3	1102-30-0000	쌀가루
94	1102-90-1000	보리가루
95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6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7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8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0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1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2	1103-20-1000	밀(펠리트)
103	1103-20-2000	쌀(펠리트)
104	1103-20-3000	보리(펠리트)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05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6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7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8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9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0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1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2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3	1104-29-1000	울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4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15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6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17	1108-11-0000	밀 전분
118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19	1108-13-0000	감자 전분
120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21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2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23	1108-20-0000	이눌린
124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5	1201-00-9000	대두(기타)
126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7	1202-20-0000	낙화생(탈각)
128	1207-40-0000	참깨
129	1207-99-1000	들깨
130	1211-20-1100	수삼
131	1211-20-1210	백삼(본삼)
132	1211-20-1220	백삼(미삼)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33	1211-20-1240	백삼(잡삼)
134	1211-20-1310	홍삼(본삼)
135	1211-20-1320	홍삼(미삼)
136	1211-20-1330	홍삼(잡삼)
137	1211-20-2110	인삼분(백삼)
138	1211-20-2210	홍삼분
139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0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1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2	1211-20-9200	인삼종자
143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4	1213-00-0000	곡물의 쟈과 껍질(벼짚에 한함)
145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6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47	1302-19-1110	인삼정(백삼)
148	1302-19-1210	홍삼엑스
149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0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1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2	1702-11-1000	유당
153	1702-19-1000	기타 유당
154	1702-90-1000	인조꿀
155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6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7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58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59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0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61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2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3	1902-19-2000	당면
164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5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6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67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67-1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68	2103-90-1030	고추장
169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0	2103-90-9040	매주
171	2103-90-9090	혼합조미, 조제품 기타
172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3	2106-90-3021	홍삼차
174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5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6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77	3505-10-3000	배소전분
178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79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80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1	3505-20-1000	전분 글루
182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183	3505-20-9000	기타 글루
184	5004-00-0000	견사
185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86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1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개정 1996. 6. 19 (관세청고시 제96- 41호)

개정 2001. 5. 29 (관세청고시 제2001-2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교역 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 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 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1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및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 4 조(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제 6 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내국세 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육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

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관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 평가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 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1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물품으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 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외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고무인을 반출입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준용)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 과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1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15조(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함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명서) ①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원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

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의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조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범칙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19조(반출입 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관한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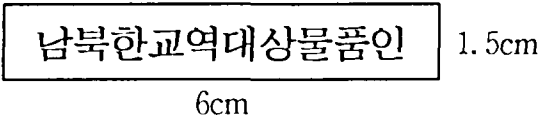
제20조(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범칙 등의 조사의뢰 (즉시)
2.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생략

[별표1] (고시 제11조 관련)



인도적지원업무편람

2003년 2월 24일 인쇄

2003년 2월 24일 발행

발행처 : 통일부 인도지원국 인도지원기획과

TEL. 02)3703-2372

FAX. 02)3703-2394

인쇄처 : (주)문원사

TEL. 02)739-3911~4

FAX. 02)739-3940

【비매품】

